

## 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계획(재선정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1. 개 요

- 사업목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및 집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선정규모: 총 55개 사(유망40, 비전10, 중견성장사다리5)
- 인증기간: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5년(재선정 2년)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5. 29.(금)
- 선정혜택: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우대지원(한도 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신규”만 해당),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등

※선정혜택 세부사항은 “붙임4” 참고

## 2. 신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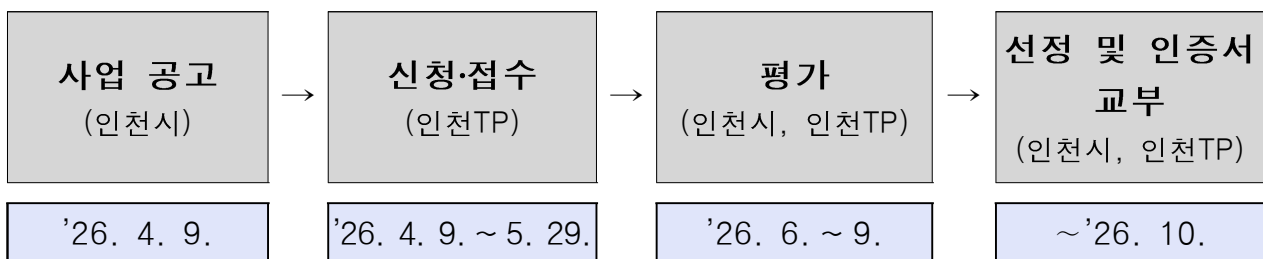
구 분	조 건 내 용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5. 29.(금) 24: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 홈페이지 접속( <a href="http://bizok.incheon.go.kr">http://bizok.incheon.go.kr</a> ) → 회원가입 → 기업지원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BizOK 회원가입 필수																												
대 상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세부사항 “붙임 2” 참고) *대상업종: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주 영위업종의 확인이 가능한 기업 *업종확인 방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접속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검색 또는 분류 내용보기(해설서)에서 검색 ( <a href="https://kssc.kostat.go.kr">https://kssc.kostat.go.kr</a> )																												
소 재 지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사·주문·업무 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기 업 규 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신 청 구 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유망중소기업</th> <th>비전기업</th> <th>중견성장사다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①매출액 전형 (25년도 기준)</td> <td>제조업</td> <td>20억 이상 ~ 80억 이하</td> <td>80억 초과 ~ 400억 미만</td> <td>400억 이상</td> </tr> <tr> <td>제조업외</td> <td>10억 이상 ~ 40억 이하</td> <td>40억 초과 ~ 200억 미만</td> <td>200억 이상</td> </tr> <tr> <td>②벤처 전형 (25년도 기준)</td> <td>연구개발비율</td> <td>9% 이상</td> <td>7% 이상</td> <td>5% 이상</td> </tr> <tr> <td rowspan="2">공통사항</td> <td>종업원</td> <td>5인 이상</td> <td>10인 이상</td> <td>20인 이상</td> </tr> <tr> <td>업 력</td> <td>2년 이상</td> <td>3년 이상</td> <td>5년 이상</td> </tr> </tbody> </table> <p>*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율 기준 초과 시 공통사항(업력, 종업원 수) 충족 기준으로 선정함 예) 매출액 90억, 종업원 5인,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비전기업(X), 유망중소기업(O)</p> <p>* 신청서 작성 시 ①매출액 전형, ② 벤처 전형 中 기준에 맞는 전형으로 신청. 단, 매출액 전형 신청 시 벤처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p> <p>* 연구개발비율: 2025년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p> <p><b>재선정 신청 대상:</b>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재선정 이력이 없는 기업(신청기준은 위와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2016년에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li> <li>○ 2011~2016년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li> <li>○ 2015, 2016년에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li> </ul>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①매출액 전형 (25년도 기준)	제조업	20억 이상 ~ 80억 이하	80억 초과 ~ 400억 미만	400억 이상	제조업외	10억 이상 ~ 40억 이하	40억 초과 ~ 200억 미만	200억 이상	②벤처 전형 (25년도 기준)	연구개발비율	9% 이상	7% 이상	5% 이상	공통사항	종업원	5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업 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①매출액 전형 (25년도 기준)	제조업	20억 이상 ~ 80억 이하	80억 초과 ~ 400억 미만	400억 이상																									
	제조업외	10억 이상 ~ 40억 이하	40억 초과 ~ 200억 미만	200억 이상																									
②벤처 전형 (25년도 기준)	연구개발비율	9% 이상	7% 이상	5% 이상																									
공통사항	종업원	5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업 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
- 「국세기본법」제85조의 5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조세포탈 사업주
- 우리 시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단계의 우수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재선정 대상기업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 3.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1차(서류) 평가: 신청자격 요건 평가(중소·벤처기업 여부, 신용등급 등)
- 2차(현지)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 실태평가(1차 평가 통과 기업 대상)
- 최종심의: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수여식: 인증서, 인증패 수여식 개최



## 4. 제출서류

### □ 필수서류

NO	서류(인증)명	인증(확인)기관	비고
1	우수기업 신청서(붙임 5)	자체작성	필수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세무서)	필수
3	공장등록증	한국산업단지공단	필수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2023 ~ 2025년)	국세청(세무서)	필수
5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필수
6	벤처기업확인서(※② 벤처전형의 경우 제출 필수)	해당기관	필수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제출용, 공고일(26. 4. 9.) 이후 발급분	기업 신용 평가기관	필수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26. 4. 9.) 이후 발급분	국세청(세무서)	필수
9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26. 4. 9.) 이후 발급분	해당기관	필수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붙임 6)	자체작성	필수

### □ 1, 2차 평가 관련 서류

NO	평가 번호	서류(인증)명	인증(확인)기관	비고
1	①	NEP, NET, GS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해당기관	
2	②	KS, UL, CE, JIS 등 국내·외 규격 인증	해당기관	
3	③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 인증	해당기관	
4	④	Q, K, KC, Q, GD마크 등 국내 품질인증	해당기관	
5	⑤⑥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 등록, 디자인등록	특허청	
6	⑦	장영실 상 또는 정부의 기술관련 상 수상	해당기관	
7	⑧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부품 소재전문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	
8	⑨	정부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	해당기관	최근 3년
9	⑩	세계일류상품 또는 신지식인 선정	산업통상지원부 등	
10	⑪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산업통상지원부	
11	⑫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지도 10일이상 이수	해당기관	최근 3년
12	⑬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또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13	⑭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14	⑮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가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15	⑯	환경친화기업(녹색인증, 환경표지, GR, 에너지절약마크 등)	환경부	
16	⑰	산재예방활동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천TP 등	최근 3년
17	⑱	ESG 경영활동 우수기업	인천TP, 해당기관 등	최근 3년
18	⑲⑳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확인서	해당기관	
19	㉑㉒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기업	인천광역시	최근 3년
20	㉓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의 품질경영 교육이수 기업	해당기관	
21	㉔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확인서	해당기관	
22	㉕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인증기업	해당기관	
23	㉖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4	㉗㉘ ㉙	알리랑출우수기업, 어린 알리랑출 우수기업, 성장유도 우수기업, 단계별 우수기업	인천광역시	최근 3년
25	㉚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해당기관	최근 3년
26	㉛	인천지역상품 구매실적(지역상품 매입 영수증 등)	해당기관	
27	㉜	중앙행정기관, 시·군·구 기업활동 관련 표창 수상	해당기관	최근 3년
28	㉝	뿌리기업(뿌리기술 전문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29	㉞	최근 2년 이내 지역사회 공헌 기업(보도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등)	자원봉사포털, 언론사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

※ ⑰ ~ ⑱ 의 경우, 인천TP 기업경영지원센터 교육·컨설팅 해당 프로그램 수료증 증빙 인정

## 5. 유의사항

- (중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PDF)하여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본일 경우)에 원본대조 완료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날인 필수
  - ※ 파일명 예시: "기업명\_서류명.pdf"
-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2026. 10월 중)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산업창업정책과의 의견을 따름
  -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032-260-0763)

# 참고 1

# 우수기업 세부평가기준

## □ 평가기준(1차 서류평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점	
신용평가 (40)	○ 신용평가등급 (등급별 배점표 참조)	등급별 배점	40		
기술 및 품질 관리 수준 (20)	① 기술개발제품 인증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 6개 항목 이상	20		
	② KS, JIS, UL, CE, CCC, FDA 등 국내외 규격 (기타 수입국 요구 시험성적서 인정)				
	③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인증				
	④ Q, K, KC, GD마크 등 국내 품질인증				
	⑤ 특허권 보유(임대사용은 제외)				
	⑥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보유				
	⑦ 장영실상 또는 정부의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⑧ 부품소재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기술 평가 (40)	⑨ 정부지원 기술혁신과제 및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 수행(최근 3년 이내)	○ 6개 항목 이상		20
		⑩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신지식인 선정기업			
		⑪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보유			
		⑫ 공공지도, 연구기관의 기술지도 10일이상 이수기업			
		⑬ INNO-BIZ(기술혁신형), MAIN-BIZ(경영혁신형) 인증기업			
		⑭ 벤처기업 인증기업 ※ 매출액 전형 지원기업만 점수 부여			
		⑮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가입 기업			
		⑯ 환경친화지정 기업			
		⑰ 산재예방활동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 수록, 관련분야 수상실적, ISO45001, OHSAS18001 등			
⑱ ESG경영활동 우수기업 - ESG 경영보고서 작성, 임·직원 ESG 교육이수 등					
⑳ ESG경영활동 우수기업 - ESG 경영보고서 작성, 임·직원 ESG 교육이수 등	○ 5개 항목 이상	18			
	○ 4개 항목 이상	16			
	○ 3개 항목 이상	13			
	○ 2개 항목 이상	11			
	○ 1개 항목 이상	8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점
자 율 평 점 (10)	경제 활성화 및 시책 참여도 (10점)	⑲ 외국인투자기업(당기총자본대비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항목 이상</li> <li>○ 3개 항목 이상</li> <li>○ 2개 항목 이상</li> <li>○ 1개 항목 이상</li> </ul>	10	
		⑳ 품질 분임조, 품질경영지원, 품질개선사례 참여기업 (최근3년 이내)			
		㉑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의 품질경영 교육이수기업			
		㉒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입주예정기업은 증빙서 제출)			
		㉓ 여성기업, 여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㉔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최근3년 이내)			
		㉕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우수 지정기업(최근3년 이내)			
		㉖ 장애인기업			
		㉗ 인천광역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㉘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 제품 구매 실적보유 기업(최근 3년 이내)			
		㉙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㉚ 인천지역상품 구매 실적(당기재료 매입액 대비 지역상품 5%이상 매입)					
일 반 가 산 점 (10점)		㉛ 최근 3년 이내 기업 활동 관련 각종 표창 수상 (정부, 시·군·구 포상)	○ 3개 항목 이상	10	
		㉜ 뿌리산업 영위기업(뿌리기업 확인서 제출한 경우)	○ 2개 항목 이상	7	
		㉝ 최근2년 이내 지역사회 공헌기업(봉사활동 등)	○ 1개 항목 이상	5	
		㉞ 우수기업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이 다음 단계의 우수기업으로 지원한 경우			
합 계(100)					

**<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표 >**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주)			배점
			등급별
AAA	e AAA	e-1(AAA)	40
AA+, AA0, AA-	e AA+, e AA0, e AA-	e-2 (AA+,AA0, AA-)	
A+, A0, A-	e A+, A0, A-	e-3 (A+,A0,A-)	
BBB+	e BBB+	e-4+(BBB+)	
BBB0	e BBB0	e-40(BBB0)	39
BBB-	e BBB-	e-4-(BBB-)	38
BB+	e BB+	e-5+(BB+)	37
BB0	e BB0	e-50(BB0)	35
BB-	e BB-	e-5-(BB-)	33
B+	e B+	e-6 (B+)	30
B0	e B0	e-6 (B0)	28
B-	e B-	e-6 (B-)	26
CCC+ 이하	e CCC+이하	e-70이하(CCC+이하)	20

## □ 평가기준(2차 현장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
경영능력평가 (10점)	○ 경영 성과	3	- 최근 3년 이상 흑자경영 : 3.0점 - 최근 3년간 2회 흑자경영 : 2.0점
	○ 경영자 경력	2	- 대표자 동업증 업력 10년 이상 : 2.0점 - 대표자 동업증 업력 5년 이상 : 1.0점
	○ 경영방침	3	▷ 경영 실권자와 대표자 일치 ▷ 기업 및 업계 동향분석 및 대응노력 ▷ 대표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자기혁신 의지 ▷ 기업 및 대표자의 사회봉사활동 ▷ 경영방침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목표 수준 - 4항목이상 : 3.0점 - 3항목이상 : 2.0점 - 2항목이상 : 1.0점
	○ 경영관리수준	2	▷ 안전보건 경영이행(규정 수립,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시행) ▷ QC(품질관리) 활동 및 제안제도 시행 ▷ 노사관계 개선 노력 ▷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식당, 기숙사, 통근차량 등) ▷ 법정 의무교육 이행 수준 - 4항목이상 : 2.0점 - 3항목이상 : 1.5점 - 2항목이상 : 1.0점
경쟁력평가 (12점)	○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5	▷ (당기 연구개발비/당기 매출액) × 100 = % - 10% 이상 : 5.0점 - 5%이상 : 4.0점 - 2%이상 : 3.0점 - 1.5% 이상 : 2.0점 - 1% 이상 : 1.0점 - 1%미만 : 0.5점
	○ 신제품 개발여부 (최근 3년 이내)	4	- 기술 인증획득 또는 신제품 개발 : 4.0점 - 기술 도입 등으로 신제품 개발계획 수립 : 3.0점 - 기존 제품 모델의 업그레이드 등 성능 개선활동 : 1.0점
	○ 경쟁력 확보 수준 (최근 3년 이내)	3	▷ 연구(R&D)관련 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운영 여부 ▷ 업무 및 기술개발 관련 해외연수 시행 ▷ IP/기술특허 거래 및 교류, 도입활동 ▷ 직원의 기술개발 관련 전문교육 실시 - 4항목 : 3.0점 - 3항목 : 2.0점 - 2항목 : 1.5점 - 1항목 : 1.0점
시장성평가 (12점)	○ 제품의 매출 성장성	4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 (A + B) / 2 A : (2024년 매출액 - 2023년 매출액) / 2023년 매출액 × 100 = % B : (2025년 매출액 - 2024년 매출액) / 2024년 매출액 × 100 = % - 20%이상 : 4.0점 - 15%이상 : 3.0점 - 10%이상 : 2.0점 - 5%이상 : 1.0점 - 5%미만 : 0.5점
	○ 거래조건, 판매전망	3	▷ 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 상품의 시장성, 신용 있는 거래처 확보 등 - 매우양호 : 3.0점 - 양호 : 2.0점 - 보통 : 1.0점
	○ 시장성 확보노력	3	▷ 최근 3년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참가 ▷ 최근 3년 국내전시회/B2B 상담회 참가 ▷ 국내외 제품 마케팅 전략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등 시장조사, 관련 컨설팅 ▷ 인터넷, 지면, 학술지, 전문서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실시 - 3항목이상 : 3.0점 - 2항목 : 2.0점 - 1항목 : 1.0점
	○ 수출 실적	2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Local L/C(내국신용장) 보증 포함 - 10%이상 : 2.0점 - 5%이상 : 1.5점 - 5%미만 : 1.0점 - 해당사항 없음 0점
정착도 및 기여도 (8점)	○ 기업의 정착도	2	▷ 기업 형태 : 법인 ▷ 공단 지역 내에 위치 ▷ 자가 공장소유 - 3항목 : 2.0점 - 2항목 : 1.5점 - 1항목 : 1.0점
	○ 사업 영위기간	3	▷ 기업 설립 후 사업 영위기간(개인 : 사업자등록증 확인, 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10년 이상 : 3.0점 - 7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 1.0점
	○ 고용창출	3	▷ 직전년도 상시 종업원 추가고용(4대보험가입자명부 확인) - 3명 이상 : 3.0점 - 2명 이상 : 2.0점 - 1명 이상 : 1.0점
유망성 (8점)	○ 기업의 유망가능성	5	▷ 주력제품, 보유기술, 경영상태, 시장성 등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 - 상 : 8.0점 - 중 : 5.0점 - 하 : 3.0점
합계		50	

※ 평가결과 1개 항목이 아래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평가 추천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  
(1차) ○ 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8점 ○ 기술혁신노력도 8점

(2차) ○ 경영능력평가 2점 ○ 경쟁력평가 4점 ○ 시장성평가 4점 ○ 정착도 및 기여도 1점

※ 1차 평가 결과 55점 이상인 기업을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1·2차 평가 후 총점 90점 이상인 기업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 후 선정함

**참고2****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범위****1. 제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범위(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 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2. 지식서비스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 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3.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범위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3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 참고3

### 우수기업 지원시책

연번	사업명		유망	비전	중견성장	비고	
1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신규	한도 20억	한도 35억	한도 55억		
			기본금리+1% 우대				
		재선정	한도 20억 또는 잔여한도 내	한도 35억 또는 잔여한도 내	한도 55억 또는 잔여한도 내		
			기본금리+1% 우대				
2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전시회		가점 20	가점 20	가점 20	인천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가점 3	가점 3	가점 3		
4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가점 3	가점 3	가점 3		
5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우대	우대	우대		
6	패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우대	우대	우대		
7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가점 3	가점 3	가점 3		
8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가점 1	가점 1	가점 1		
9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가점 3	가점 3	가점 3		
10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가점 3	가점 3	가점 3		
1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가점 3	가점 3	가점 3		
12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가점 3	가점 3	가점 3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가점 3	가점 3	가점 3		
14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가점 3	가점 3	가점 3		
15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3	가점 3	가점 3		
16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점 3	가점 3	가점 3		
17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가점 3	가점 3	가점 3		
18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가점 5	가점 5	가점 5		
19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우대	우대	우대		
20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우대	우대	우대		
21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사업		우대	우대	우대		
22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사업		우대	우대	우대		
23	로봇산업 혁신성장지원 사업		우대	우대	우대		
24	인천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사업		우대	우대	우대		
2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신규선정만 해당)		○	○	○		인천시
26	SGI서울보증 할인		○	○	○		서울보증보험
27	중국마케팅 전담 지원		가점 3	가점 3	가점 3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시책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4

##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과 ② 상한기준 모두 충족

-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구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가구 제조업	C32	
	식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기타 제품 제조업	C33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제조 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제조업 외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교육 서비스업	P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붙임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b>수집·이용 목적</b>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접수/심사) 및 사후관리(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시책홍보)		
<b>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b>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 부서, 직책, 휴대전화, 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우수기업 선정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심사 결과 및 시책 안내 등	
<b>보유·이용 기간</b>	<b>5년</b>	<b>보유·이용 근거</b>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b>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b>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기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 사업 신청참여가 불가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b>제공 목적</b>	<b>우수기업 선정 관련 심사 및 평가, 사후관리, 시책 홍보</b>		
<b>제3자 (제공 내역)</b>	제공 받는 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관내 군, 구, 시의회, · (사)유망기업연합회, (사)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전문기관	
		<b>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b>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 부서, 직책, 휴대전화, 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우수기업 신청, 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b>제공 기간</b>	<b>5년</b>	<b>제공 근거</b>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b>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b>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기 목적에 한해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 사업 신청참여가 불가함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중